

군산경제자유구역지정을 위한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2007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2007. 5.



전북발전연구원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진

김 보 국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 성 백 • 전북발전연구원 선임위촉연구원

이 정책자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 차

I. 정책검토배경	1
II. 사전환경성검토서 추진근거	1
III.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방법	1
IV. 사전환경성검토 행정절차	2
V. 사전환경성검토 작성지침내용	3

정책검토배경

- 행정계획과 개발계획의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방법에 대한 불명확성 논쟁발생
 - ▶ 환경부 국토환경보전과 유선을 통한 질의
 - ▶ 행정계획과 개발계획의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방법 구별되어 있음
 - ↳ 개발계획 : 환경부고시 제2006-105호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별표 1]에 근거하여 작성
 - ↳ 행정계획 : 환경부고시 제2006-105호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별표 1] 제1호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내용과 [별표 2]에 근거하여 작성

사전환경성검토서 추진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의거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 2에 의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행정계획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방법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 및 제5항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작성방법은 환경부고시 제2006-105호의 [별표 1], [별표 2]와 같음
 - ▶ 사전환경성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의 목록
 - ↳ 대상지역의 식생(植生),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 * 기존 환경부 제공 생태·자연도, 환경성평가지도 활용 가능
 - ↳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 * 환경오염추정망이 있는 경우에는 동 측정자료 인용할 수 있음
 - ↳ 대안 및 그 환경영향검토 결과와 영향저감방향
 - ↳ 대상지역의 축척 1:25,000인 위치도
 - ↳ 대상지역의 축척 1:3,000 내지 1:25,000인 토지이용계획도
 - ↳ 그 밖에 사전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특성

사전환경성검토 행정절차

행정계획입안(군산경제자유구역)		
환경성검토협의회 구성	<p>시행령 제8조의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은 대상지역의 관계 전문가, 관계행정기관 및 협의기관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10인 이내로 구성 ○ 계획을 수립하는 담당부서에서 직접 구성하고, 환경관련 부서에서는 협의회 구성원으로 참여 ○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자료준비(상위계획 및 현황조사) ○ 대안의 종류 ○ 중점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p>※ 대안 및 검토항목은 환경부 고시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2006-105호, ‘06.6.30)”에 의거 검토서 작성</p>	7일
환경성검토협의회 의견수렴		60일
영향예측 및 평가		30일
검토서 초안작성		30일
주민의견수렴	<p>시행령 제8조의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람 및 설명회(1회이상 공고, 20일이상 공람) ○ 공청회 등(14일 전까지 1회이상 공고) 	30일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완료	○ 의견수렴 타당성이 인정되는 의견에 대해 계획에 반영	30일
협의요청	○ 전북도→제경부→환경부(법 제25조의 3)	10일
환경성검토	○ 환경부(전문가 자문, 현지확인 등)	30일
협의의견통보	○ 환경부→제경부→전북도 (시행령 제9조 30일 이내, 10일 연장 가능)	10일
협의의견 반영 또는 필요조치	○ 전북도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	○ 전북도→제경부→환경부 (시행령 제10조, 30일 이내)	30일
경제자유구역지정		297일

행정계획입안→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217일, 7.2개월)→경제자유구역지정(297일, 9.9개월)

●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역할

▶ 대안의 설정

↳ 행정계획 수립기관이 대안을 설정할 때 주안점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정책적·규모적·입지적·기술적 대안 등을 검토

▶ 중점 검토항목 설정(스코핑) 및 검토방법

↳ 해당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항목(스코핑) 및 검토방법 등을 검토

↳ 대안 및 세부 검토항목은 환경부고시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 2006-105호, '06.6.30)”을 따름

사전환경성검토 작성지침내용

1. 행정계획의 개요

1) 목적 및 필요성

- 해당 행정계획의 목적 및 필요성 등에 대한 필요한 근거를 충실히 작성하고, 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의 장점 등을 작성
- 해당계획의 추진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

2) 추진경위

- 해당계획의 확정, 결정, 승인기관명을 기재
- 해당 행정계획의 추진배경과 관계법에 의한 추진경위를 기술하고, 각 절차별로 추진 일정과 주요내용을 기술
- 해당 행정계획의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히 기술

3) 계획의 추진 근거

- 해당계획의 상위 행정계획에 대해서 기술하고, 상위 행정계획 또는 타 관련계획과의 연계내용을 기술.
- 해당계획의 상위 계획·기타 관련계획(환경계획 등)과의 관련성 조사하고, 상위계획 또는 관련계획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파악

2. 대상지역의 현황

- 대상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용현황, 계획기간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서술
- 대상지역이외 환경상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주변지역에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별표2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지구·구역 등의 분포현황

3. 현황조사 및 계획의 영향범위

1) 해당계획이 미치는 영향

- 계획의 사회·경제·환경적 파급효과를 파악
- 계획으로 인한 영향의 시간·공간적 범위를 파악
- 해당계획의 시행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예측
- 해당계획과 관련하여 시행이 정해진 개발계획이나 해당계획의 입지 인근지역에 시행이 결정된 개발계획을 조사
- 해당계획이 시행될 경우 추가적으로 시행이 예상되는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사전조사 또는 예측

2) 대상지역의 현황조사

▶ 지역적 현황

- 인구현황 및 변동추이, 지형적 현황
- 취수장·정수장, 문화재, 천연기념물, 역사·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조물·유적 등 보호를 요하는 시설물
- 공장·공항·도로·철도 등 환경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시설물
- 기타 대상지역의 환경과 개발 상황·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 대상지역의 축척 1 : 25,000인 위치도
- 토지이용현황(대상지역의 축척 1: 3,000 내지 1 : 25,000인 토지이용계획도 등)
- 그 밖에 사전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특성

▶ 환경적 현황

- 환경관련 지역·지구의 지정현황
- 환경기준, 생태·자연도(녹지자연도), 환경성평가지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 동·식물 서식현황 및 철새도래 현황
- 대상지역의 식생(植生), 생태적 특성에 관한 사항
-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 대안 및 중점 검토항목의 설정

1)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의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해 기술
-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의 활동내역을 제시

2) 중점 검토항목의 도출

- 해당 행정계획의 환경상 쟁점에 대해서 기술
- 주요 환경상 쟁점 등으로 인한 검토 필요 항목 및 그 선정이유를 제시
- 중점 검토항목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검토방법 및 검토내용을 제시

3) 대안설정

① 대안의 제시

- 대안을 제시할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No Action, 수단·방법, 수요·공급, 입지 및 시기 등 적용가능한 대안을 제시
- 대안을 마련할 경우에는 상위계획 및 타 행정계획의 연관성, 총량적 개념 등에 유의하여야 선정
- 대안은 실천가능하고 현실적이어야 하며, 환경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고, 본래의 계획수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

② 대안 및 환경영향검토 결과와 영향저감방향

- 환경영향 예측 및 평가는 대안별로 작성하며, 세부 검토항목을 위주로 실시
- 평가내용은 광역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한다. 또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합리성을 수반한 정성적인 평가로 실시

▶ 대안에 대해 환경영향을 검토하여야 하는 세부항목

검토항목		내 용
계획의 적정성	가) 계획의 환경목표와의 부합성	1) 국제 환경동향·협약·규범과의 부합성 2) 국가 환경기준·계획과의 부합성 3) 지역 환경기준·계획과의 부합성
	나) 계획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1) 환경계획의 건전성 2) 지속가능성과의 부합성
	다) 계획의 일관성	1) 수직적 일관성 2) 타 행정계획과의 연계성
	라) 기타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 등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1) 생태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2) 생물다양성·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3)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1)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에 미치는 영향 2)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3)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다) 기타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 등

▶ 대안에 대한 환경영향 검토 : 세부 검토항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및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를 기술(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수렴 선정)

세부 검토항목	검토결과	검토내용 및 근거
1. 생태축·녹지축의 단절을 초래하지 않는가?	yes	o 검토항목별 검토결과의 판단내용 및 근거를 기술
2.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이 가능한가?	no	
...

* yes : 긍정적 영향, no : 부정적 영향, yes/no : 판단유보(중립)

5. 저감방안 및 사후관리 계획 수립

1) 저감방안의 수립

○ 선정된 최적대안이 환경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 경우에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마련

2) 사후관리 계획 수립

○ 선정된 최적대안이 관련 개발계획으로 연계될 시에 추진하여야할 저감방안 제시
○ 개발계획의 시행이후 환경적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항목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목적에 대해 기술